

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21. 7. 13.>

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4일
신청인	영업장 명칭	영업주 성명	
	사업자등록번호	생년월일	
	영업장 주소	전화번호	
	완비증명서 발급번호	완비증명서 발급일	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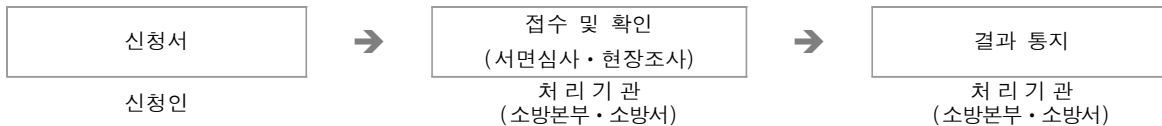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최근 3년 동안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
- 최근 3년 동안 소방·건축·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
-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
-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